



수 원 지 방 법 원

제 1 - 2 형 사 부

판 결

등본입니다.

2024. 6. 24.

법원사무관 노 의



사 건 2023노

사기,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, 자동차불법사용, 사기미수, 점유이탈
물횡령, 도로교통법위반, 도로교통법위반(음주운전), 도로교통법위
반(무면허운전), 횡령, 전자금융거래법위반

피 고 인 일용직

주거

등록기준지

항 소 인 피고인

검 사 (기소), (공판)

변 호 인 법무법인 명

담당변호사 최철호

배상신청인(제1 원심)

원 심 판 결 1.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

2.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

판 결 선 고 2024. 6. 21.



주 문

제1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.

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.

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